

서울특별시교육청 각급학교 학생 교통안전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제안설명

발의자 : 김원태 의원(송파6, 국민의힘)

의안번호 : 제1366호

교육위원회

안녕하십니까.

이승미 위원장님을 비롯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.

송파 제6선거구 출신 김원태 의원입니다.

먼저 「서울특별시교육청 각급학교 학생 교통안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신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.

요즘 학생들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발생하는 사고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. 심하면 사망사고까지 발생하는 등, 이와 같은 사고 소식은 언론보도 등을 통해서도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.

또 현행법상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면허 이상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16세 이상만 이용할 수 있게 하였으나, 대부분의 16세 이상 학생들이 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은 채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동 조례의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.

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

- 제2조(정의) 조항에 ‘개인형 이동장치’와 ‘인명보호장구’ 정의를 신규로 규정하였습니다.

- 제3조(책무) 조항에 교통안전을 위한 협력단체에서 ‘도로교통공단’을 추가 규정하였습니다.
- 제8조(교통안전교육)에서 잘못 규정되어 있었던 ‘바퀴달린 놀이기구’ 부분을 수정하였으며,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안전 운행 및 인명보호장구 착용과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 준수에 관한 지도, 교통사고 등 안전사고의 위험성 및 예방대책 안내를 교육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.

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
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!

부디 개정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셔서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

감사합니다.